

## 전자보증(B2B) 확대 시행

조함원사의 보증서 발급 및 제출의 편리를 위해 조함과 보증채권자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증신청과 보증서 제출이 가능한 “민간공사 전자보증 제도(B2B/G2B)”를 아래와 같이 시행 중에 있으며 2015.1.14부터 **코오롱글로벌(주)**과 전자보증이 가능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대상

- 조달청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지급보증
- 한전 및 한전 계열사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 민간업체 :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지급보증

### 나. 전자보증 가능기관(2015. 1. 16 현재)

#### (1) 민간업체(41개사)

현대건설(주), 롯데건설(주), 금호산업(주), 경남기업(주), 대아이앤씨(주), 아이투빌산업개발(주), 대원건설(주), 대원건설산업(주), 대림산업(주), 고려개발(주), 두산건설(주), 신세계건설(주), (주)태영건설, 신동아건설(주), 풍림산업(주), 동부건설(주), 진흥기업(주), 한신공영(주), (주)포스코건설, (주)삼호, 울트라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에스케이건설(주), (주)한화건설, 극동건설(주), (주)케이씨씨건설, (주)한진중공업, (주)대륜이엔에스, (주)한국종합기술, 지에스건설(주), 일성건설(주), (주)대우건설, 한라건설(주), (주)대명건설, 현대엠코(주), 삼성물산(주), 쌍용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삼성에버랜드(주), (주)서브원, **코오롱글로벌(주)**

#### (2) 공공기관 및 공기업(13개사)

조달청(G2B), 한전 및 한전계열사 : 12개사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 “인터넷민원서류 발급” 이용방법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조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화를 추진하여 조합 이용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영업활동 지원으로 고객지향 정보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주요 민원서류의 인터넷발급에 대한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서류 발급 종류는 ①출자좌수증명원 ②신용평가확인서 ③보증잔액증명서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⑤용자금잔액증명원 ⑥용자이자납부내역서 ⑦금융거래확인서 등 7종입니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www.seolbi.com은 사이버지점 수요 증대 및 조합원들의 보다 편리한 접근을 위해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영업정보서비스를 모두 통합하고 「건설서비스 포털사이트」로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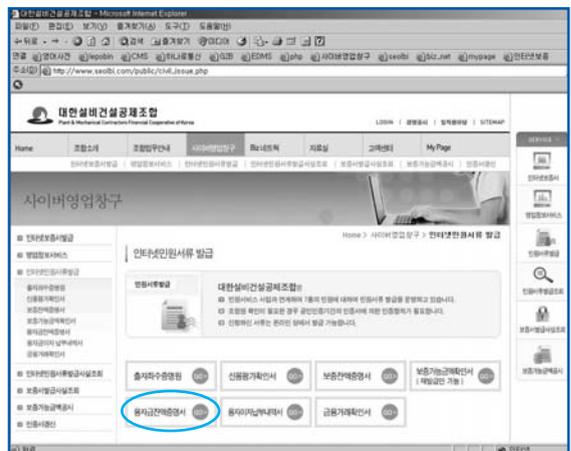
## 1.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이용 방법

1. 조합 홈페이지 <http://www.seolbi.com/>에 접속한 후 SERVICE MENU 중 “민원서류발급” 메뉴를 클릭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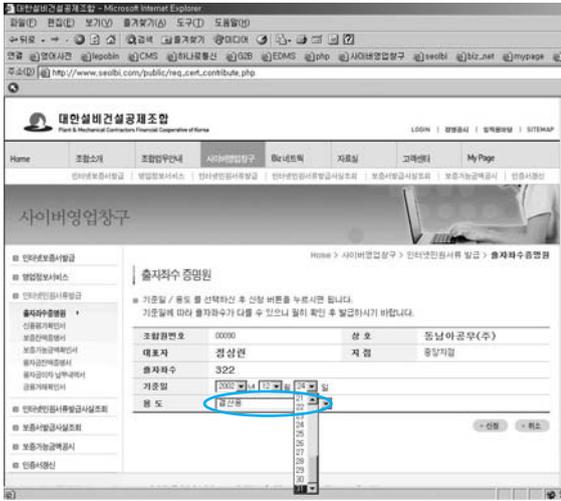
2.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메인페이지에는 총 7종류의 민원서류 신청화면이 있습니다. 이중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외한 6개의 민원서류는 발급방법이 같고, 금융거래 확인서만 지점에서 승인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출자좌수증명원 발급을 설명합니다.

가. 출자좌수증명원 발급

(1) “출자좌수증명원” 버튼을 클릭



(2) “출자좌수증명원” 신청화면에서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기준일에 따라 출자좌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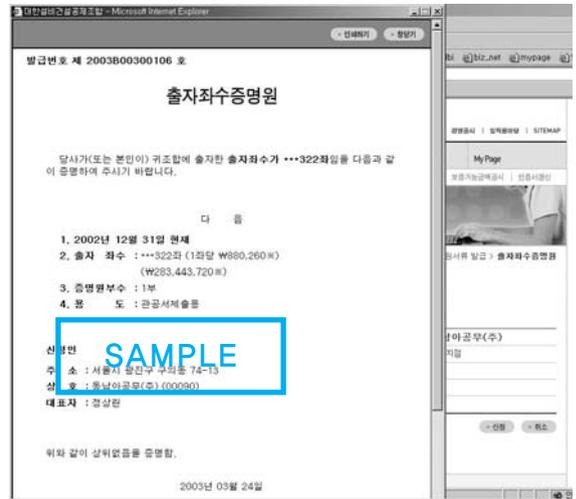
(3) 발급용도를 아래와 같이 선택합니다. 기준일과 용도를 선택했으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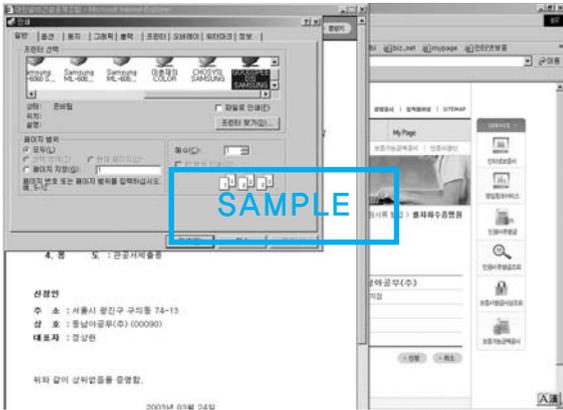
(4)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인증서 로그인 후 출자좌수증명원 출력화면이 보입니다. 민원서류내용을 확인한 후 오른쪽 상단에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프린터 선택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출자좌수증명원이 출력됩니다.



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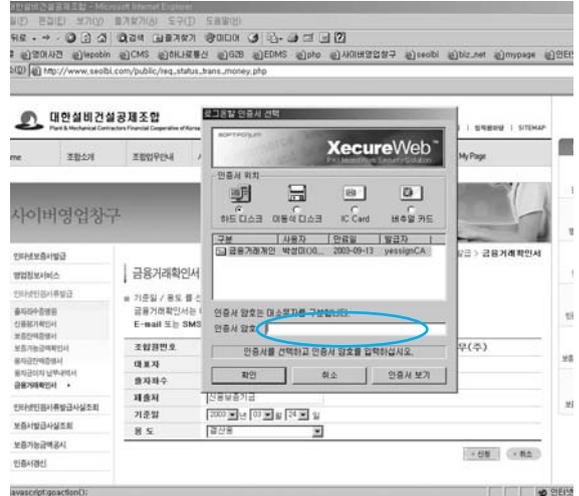
(1) “금융거래확인서” 버튼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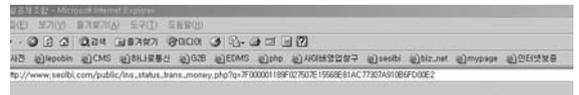
(2) 금융거래확인서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출처”를 입력하고, “기준일과 용도”를 선택한 후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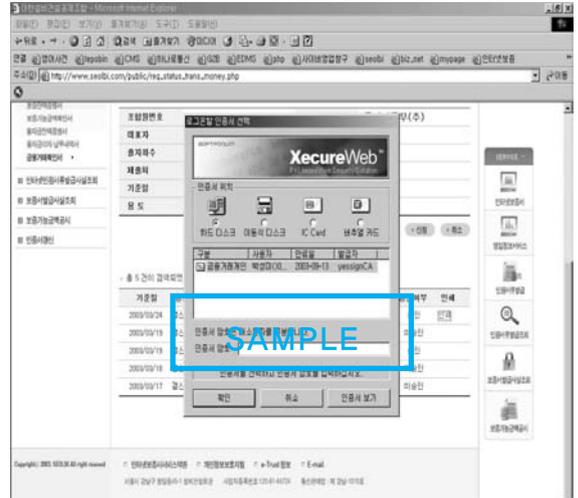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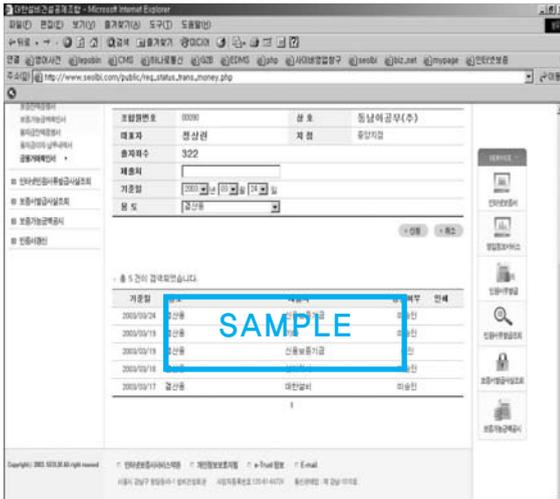
(4) 금융거래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였다면 메시지가 보이면 확인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5) 금융거래확인서는 지점승인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경우 아래에 승인여부란에 미승인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관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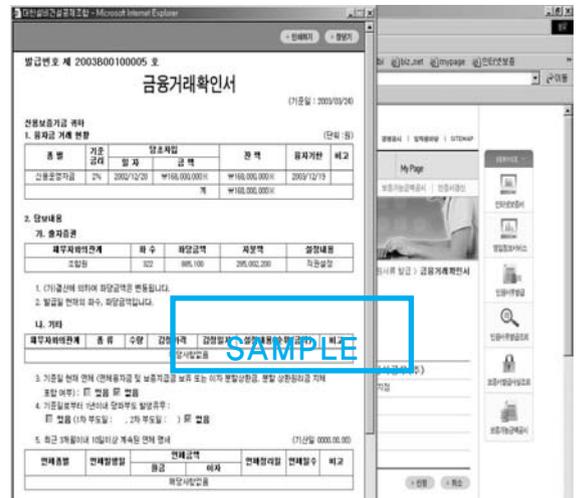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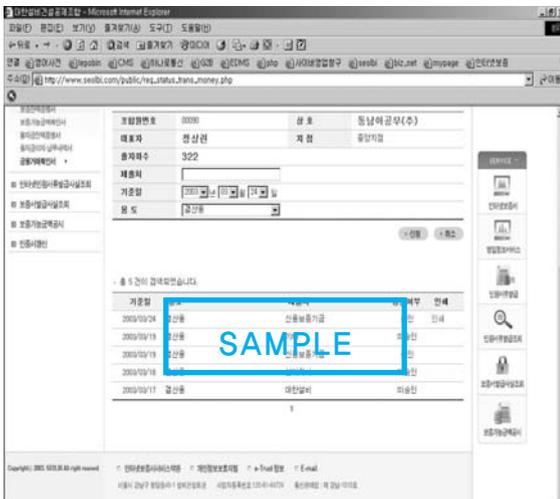
점에서 정상적으로 승인을 완료하였을 경우 인쇄란에 버튼이 나타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융거래확인서는 인터넷 보증발급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7)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8) 금융거래확인서 출력창이 새로 보입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오른쪽 상단에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를 출력합니다.

(6) 우리조합 관할지점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금융거래확인서 신청화면 하단에는 승인여부란에 "승인", 인쇄란에 "인쇄" 버튼이 표시되면 인쇄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약보증 책임과 계약보증금의 성질

## 1 보증책임 및 지급한도 (계약보증약관 제1조)

가.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외화보증금액이 병기된 경우에는 원화보증금액을 적용합니다. 이하 “보증금액”이라 합니다)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나. 보증채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별도로 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4.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인가·승인·관리·감독 등을 받는 기관

## 2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계약보증약관 제2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

란으로 인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선금(계약금, 착수금 등) 반환채무
6. 보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체상금 약정액 및 보증채권자의 대지급금(채무자와 계약한 노무자에 대한 노임, 자재업자의 자재대금, 장비업자에 대한 장비대금 등) 반환채무
7. 보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급한 초과기성금(공사 공정을 대비 초과 지급된 기성금)반환 채무

## 3 주계약의 해지 (계약보증약관 제5조)

- 1) 보증채권자가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간 내 또는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5일이내에는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 3) 보증채권자가 2)의 기간내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보증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1. 나3)의 기관일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계약보증약관 제3조)

1)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청한 자료와 소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1. 보증서 사본
2. 계약관련 서류(내역서 포함)
3. 기성관련 서류(기성금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계약해지 및 타절정산 관련 서류
5. 실제 손해액 입증 서류
6. 기타 조합이 보상심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2)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의한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5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계약보증약관 제4조)

- 1)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의 지급유예조치·기성부분의 훼손예방 등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2) 보증채권자가 제1항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

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주계약의 이행 중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바로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권자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2. 채무자나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3. 채무자가 노임, 자재,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된 금액을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기성금으로 직접 지급할 경우

#### 6 보증계약의 효력상실 (계약보증약관 제6조)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2.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 7 시공상황조사 및 보증채무확인 조사 (계약보증약관 제7조)

- 1)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현장을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직접 조사하거나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자에게 조합이사장 또는 대행

-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증표를 휴대하게 합니다.
- 2) 조합은 시공상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증채권자, 채무자 및 감리자에게 계약변경내용·시공방법·착공 및 공정계획·공사진척상황·기성금지급·자재 및 노임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3)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4) 보증채권자는 전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8 보증금의 지급시기 (계약보증약관 제8조)

- 1) 조합은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문서(심사자료 포함)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심사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 및 소명에 소요된 일수는 제외하기로 합니다.
- 2) 조합은 보증채권자의 청구금액 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9 계약보증금의 성질

- 위약금 :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 (민법 제398조제4항)
-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 해약추정금 :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해 수수된 것임

- (제565조, 제567조)
- 손해배상예정액의 예정 내지 위약금 계약금 수수 시 “위약 시는 교부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특약 시는 해약금성질을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갖고 있음(대법원 71.5.24, 71다473)
  - 계약보증금을 위약별로 보느냐 아니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느냐의 실익은
    - 위약별로 보는 경우는 그 금액이 실제 손해 발생액보다 과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는 일정요건 하에 법원에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 있음
  - 귀책사유 및 손해 미발생의 증명과 배상 예정액의 관계
    - 다수설은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실, 손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 또는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도 적다는 것 등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거나, 금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 채권자도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증액을 청구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가 불가항력, 무손해의 항변권, 특별손해의 배상 등에 관하여 특약을 한 때에는 그에 의함

### 〈예정배상액의 증감〉

- 과다한 경우 : 법원은 적당히 감액 할 수 있음 (제398조제2항)
- 과소한 경우 : 증액하지 못함
- 과실상계
    - 판례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하나(대법원 72.3.3.1, 27다108), 통설은 채권자가 자기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예정액의 감액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를 긍정함 